

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1997. 11. 21 —————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11. 22

다. 상 정 일 자 : 제62회 사하구의회(정기회)

제1차 총무사회위원회(97.11.26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장영석 보건소 서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,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
조례내용의 미비점을 개정,보완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조례규정의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,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,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)
- 보건소에서 수행하지않는 입원관련 조항 삭제(제8조)
- 건강진단수첩 발급시 수수료 납부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의 전면에 붙여 소인하던 것을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 이면에 붙여 소인하고, 주민에게 불편한 신청서 제출을 삭제(안 제8조)
- 제증명 발급수수료중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, 성별 및 연령감정서, 출생·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발급 삭제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것은 현재의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, 운영하고 있으며, 의료복지법 제3조 제3항, 제4항, 제5항의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에 해당되지 않고, 환자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, 입원 업무도 수행하지 않아 조치한 사안이며,

- 안 제8조는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며
- 안 별표의 내용중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당 500원, 성별 및 감정서 1통당 2,000원, 출생·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당 500원을 삭제하는 것은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 규정 및 의료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수행하지 않는 업무에 해당하여 조치한 사안으로서
-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